

교수창업 운영규정

전문제정 2020.04.23. 개정 2022.03.04.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혜전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교수 및 실험실의 창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교수창업: 교수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연구개발한 성과를 활용하여 기업을 교내에서 창업하는 것을 말한다.
2. 겸직: 교수가 창업과 관련하여 교수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기업의 대표 또는 임직원을 겸하는 것을 말한다.
3. 실험실창업: 교수가 본교의 실험실에서 기업을 설립하고 본교가 보유하고 있는 연구 시설을 활용하여 개발한 연구 성과를 사업화함을 말한다.

제3조 (심의조정)

교수 창업에 관한 제반 사항은 본교 교수창업운영위원회가 심의·조정한다.

제4조 (창업절차)

- ① 창업승인을 받고자 하는 교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교수 창업 겸직 허가 신청서[별지서식 제1호] 1부
 2. 다음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및 관련 자료 1부
 - 가. 창업교수의 이력사항
 - 나. 창업동기 및 회사 개요
 - 다. 시장성 및 사업효과
 - 라. 사업 참여자의 역할과 인적사항
 - 마. 수업 및 학생지도 대책
- ② 교수의 창업신청서가 제출되면 교수창업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총장은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교수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협약체결)

창업을 승인받은 교수는 승인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본교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6조 (창업교수의 신분)

- ① 총장은 겸직을 허가할 수 있다.
- ② 겸직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하고 총장의 승인을 받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 (창업승인의 취소)

- ① 창업승인을 받은 교수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취소 할 수 있다.
 1. 창업활동이 교육과 연구수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총장이 판단한 경우
 2. 창업교수 등이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사전 승인 없이 사업계획을 변경한 경우
 4. 창업성과가 미미하고 창업의 성공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교수창업운영위원회에서 판단한 경우
 5. 본교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6. 기타 총장이 승인된 사항을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② 창업승인이 취소된 교수는 취소일로부터 2월 이내에 창업과 관련한 일체의 활동을 중지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창업교수의 기부사항)

창업교수는 본교에 기부(기여)를 할 수 있으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제5조에 따라 체결한 협약서[별지서식 제2호]를 기준으로 한다.

제9조 (지식재산권)

이 규정에 따른 지식재산권은 해전대학교 산학협력단 지식재산권 관리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위 규정에서 말하는 법인은 해전대학교로 한다.

제10조 (사무관장)

이 규정의 교수창업과 관련된 업무는 본교 산학협력센터에서 관장한다. <개정 2022.03.04.>

제11조 (기타 세부사항)

이 규정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기타 세부사항은 교수창업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부 칙(2020.04.23)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0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03.04)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03월 04일부터 시행한다.

[별지서식 제2호]

협약서

혜전대학교 총장(이하 “갑”이라 한다)과 _____(이하 “을”이라 한다)는 혜전대학교 교수창업운영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 (겸직허가와 의무이행)

“갑”은 “을”의 기업 임원(_____)겸직을 허가하며, “을”은 혜전대학교 교수창업운영에 관한규정 및 협약에 따라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제2조 (기부/기여)

① “을”은 다음과 같이 “갑”에게 기부/기여한다.

② 기부/기여의 기간과 시기는 _____로 한다.

제3조 (지식재산권)

“을”은 교수창업운영규정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관리 활용한다.

제4조 (시설 및 장비, 기자재의 이용)

① “갑”은 “을”의 창업지원을 위해 다음의 시설물의 이용을 허가한다.

○○관 ○○○호, _____㎡

② “갑”은 “을”의 요구에 따라 전항의 시설물 이외에 기재재 및 기타 설비 등의 이용을 허가할 수 있다.

제5조 (시설이용료)

①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의 월간 이용료는 1㎡당 _____원으로 한다.

②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료는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특약사항으로 따로 정한다.

③ 전항의 이용료 납부시기는 6개월 단위로 한다.

제6조 (공과금의 부담)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 이용에 따른 수도료, 전기료를 포함한 각종 공과금은 “갑”의 청구에 의해 “을”이 부담한다.

② “갑”은 위 공과금을 선납하고 이를 “을”에게 사후 청구할 수 있다.

제7조 (권리의 양도, 전대 등의 금지)

“을”은 제3자에게 시설 사용권을 양도하거나 시설 등을 전대할 수 없다.

제8조 (“을”의 의무)

① “을”은 허가 시설물의 이용기간 동안 “갑”으로부터 제공받은 시설물 및 부대 시설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갖는다.

② “을”은 학교의 시설, 장비 및 기자재 등을 이용함에 있어 청결유지와 화재 및 도난의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인화물 또는 폭발위험이 있는 물품의 반입 제한, 출입의 관리 등에 있어 관련 부서 담당자의 통제와 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 (목적물의 구조변경 등)

① “을”은 본 시설물을 본래 목적 외에 이용할 수 없으며 “갑”의 사전허가 없이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없다.

- 1. 시설물의 구조변경
- 2. 시설물 부착물의 철거 및 훼손 등의 행위

② 협약기간의 만료 또는 협약해지로 인하여 협약이 종료되면 “을”은 대학이 제공한 시설물을 “갑”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10조 (원상복구)

“을”은 시설물의 원형을 변경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신속히 원상회복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11조 (협약의 해지)

“을”이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지체하거나 본 협약을 위반한 경우 또는 시설이용료나 공과금을 2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용기간 중 일지라도 “갑”은 중도에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2조(위약배상)

제10조의 규정에 의해 협약이 해지되었을 경우 “을”은 위약배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

제13조(분쟁해결 및 관할법원)

본 협약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통상관례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조정한다. 다만, 상호협약이 되지 아니할 때에는 대전지방법원 흥성지원을 관할 법원으로 한다.

제14조(협약기간)

제3조의 시설물 및 기타 설비 등의 이용기간은 겸직 허가기간으로 하며 겸직 허가 기간간의 연장 또는 해지에 따라 자동으로 연장 또는 해지된다.

제15조(특약사항)

본 협약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갑) 혜 전 대 학 교

(을) _____

총장 ○ ○ ○ (인)

대표 ○ ○ ○ (인)